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**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528(2022.1.4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1.17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444(2022.1.17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, 이용 중 **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**에 관해 다음과 같이 **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을 해제**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.

가. 적용기간: 2022.1.18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도*

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주요내용

주요 내용
<p>□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(6종)</p> <p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5px;">▲독서실스터디카페 ▲영화관공연장 ▲박물관미술관과학관 ▲도서관 ▲대규모점포 등*▲학원 등**</p> <p>*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</p> <p>**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</p>

라. 참고사항

-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(관악기, 노래, 연기)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
-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

마. 문의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(☎044-202-1725)

붙임 1.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1부
2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

주무관 **손윤인** 서기관 **배기주** 학생건강정책 전결 2022. 1. 18.
과장 **정희권**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448 (2022. 1. 18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14동 (어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962 팩스번호 044-203-6962 / syi0410@korea.kr / 대국민 공개